

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안

의안
번호

--

제출년월일 : 2000. 11 . 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☐ 제안이유

농·축산물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농촌지도자회·생활개선회·농업경영인회·4-H회등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 전문경영인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·지원하기 위하여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.

☐ 주요골자

- 가. 농업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을 설치함 (안 제3조 제1항)
- 나. 기금의 재원은 파주시출연금과 기존에 조성된 4-H후원기금,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함(안 제4조)
- 다. 기금은 농업인학습단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의 육성사업, 해외연수사업, 연찬사업 및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(안 제5조제1항)
- 라. 사업비의 지원은 기금의 용도에 따라 기준을 정하되 구체적인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 13조)
- 마.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15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함 (안 제8조)

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농·축산물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업인 학습단체”라 함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발전을 위한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해 조직된 각급 단위 농촌지도자회·생활개선회·농업경영인회·4-H회를 말한다.
2. “농업전문경영인”이라 함은 농업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갖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학습단체 회원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를 말한다.

제3조 (기금의 설치) ①시장은 농업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.)을 설치한다.

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·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.

제4조 (기금의 재원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파주시 일반회계 출연금
2. 기존에 조성된 4-H 후원기금
3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4. 기타 수입금

제5조 (기금의 용도)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.

1. 농업인 학습단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사업

2. 선진해외농업 연수사업
 3. 농업인 학습단체회원의 연찬 사업
 4. 기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
- ②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6조 (기금의 운용관리)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.

④제3항에 의한 운용기금은 기금의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, 연간 운용기금으로 사용후 남은 잔액은 적립기금으로 관리한다.

제7조 (기금관리공무원)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 : 농업기술센터 소장
2. 기금출납원 : 경영지원담당

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 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농업진흥과장, 농업기술과장
2. 농업인학습단체장 또는 단체장이 추천하는 자
3. 농업분야 전문가 및 기금의 운용·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

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
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9조 (위원회의 기능)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안
 2. 기금결산보고서안
 3. 기금의 지원대상자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지원기준
 4. 기타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-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 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.
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 (간사 및 수당)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영지원담당
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
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 (지원대상자 선정)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제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
자 또는 단체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.

제13조 (사업비 지원) ① 사업비는 운용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,
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.

1. 제5조제1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농업인학습단체에게는 4천만원이내,
농업전문경영인에게는 1천만원이내의 범위안에서 지원한다.
2. 제5조제2호에 의한 지원은 공무원국외여비규정의 6급에 해당하
는 금액으로 한다.
3. 제5조제3호에 의한 지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한다.
4. 제1호에 의한 지원금은 비료·농약·유류·사료 등의 운영비로

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제1항에 의한 사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·지원조건등은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.

제14조 (기금운용계획)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3.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
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5조 (기금의 결산)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
2.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
3.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

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16조 (회계년도) 기금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 년도에 준한다.

제17조 (관계규정의 준용 등)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·지출의 절차 및 출납·보관,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

제18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실, 과, 소		농업진흥과 ☎ 940-4901
입 안 자	농업진흥과장	김 규 현
	경영지원담당	차 병 업